

# 주식회사 코백엔지니어링 상조회 회칙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 (명칭)

본회는 코백엔지니어링 상조회라 칭한다.

### 제2조 (목적)

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각자의 건강증진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집행한다.

- ① 회원 상호간의 경조금 지급
- ② 회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업
- ③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## 제2장 회원과 회비

### 제4조 (회원)

본회의 회원은 주식회사 코백엔지니어링에 재직하는 정규직 직원으로 한다.

### 제5조 (가입 및 탈퇴)

- ① 본회는 전조에 정하는 회원의 자격을 얻은 때에 가입되며, 잃은 때에는 탈퇴된다. 단, 가입시에는 입회원서[서식1]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본회의 가입은 종업원들의 자유의사로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조에 정하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전 종업원이 동참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휴직 등의 사유로 회비를 납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 탈퇴한다. 단, 본회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휴직 시에는 회원자격을 유지하기로 한다.
- ④ 회원이 중도 가입할 때에는 해당 월의 회비를 징수하나 탈퇴시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.
- ⑤ 본사에서 퇴직한 회원은 퇴임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상실하며, 본 규정의 상조 혜택을 받지 못한다. 단, 본인의 결혼관계로 사직할 시 1개월 이내에서는 상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⑥ 가입일로부터 만2년이 되지 않은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지급받았던 경조금의 합이 납부

하였던 경조회비의 합보다 큰 경우, 그 차액은 급여에서 공제한다.

#### 제6조 (회비 및 재정)

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비, 특별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재정에 충당한다.

- ① 회비 : [별표1]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매월 급여 지급시 공제한다.
- ② 특별회비: 본회의 운영상 재정이 부족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얻어 부족분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할당 징수한다.
- ③ 기타 각 특별 찬조금으로 한다.

#### 제7조 (기금의 관리)

본회의 기금은 회장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며 회장의 임기 만료시에는 새 회장 명의의 통장으로 이전 관리한다. 상기 통장은 상조회 기금 전용으로서만 사용하여야 한다.

## 제3장 조 직

#### 제8조 (임원)

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- ①회장 : 1명    ②총무 : 1명    ③부총무(경리담당자) : 1명    ④고문 : 1명

#### 제9조 (임원의 선출)

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#### 제10조 (임무)

본회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에 의장이 되며, 가부동수일 때에는 투표권을 갖는다.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.

#### 제11조 (임기)

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가능하며 보선된 임원은 잔여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.

#### 제12조 (위로금)

회장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직전 회장 및 총무에게 약간의 위로금 및 감사패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# 제13조 (회의)

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구분한다.

- ① 정기총회 : 매 년도 결산 후 60일 내에 실시한다.
- ② 임시총회 : 회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#### 제14조 (회의의 구성)

본회의 구성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회칙 수정은 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회칙을 수정, 삽입, 삭제 할 수 있다.

## 제4장 운영

#### 제15조 (경조사유와 지급기준)

- ① 회원에 대한 경조금 등의 지급사유와 지급기준은 [별표2]의 규정에 의한다.
- ② 상조회 가입일로부터 만12월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은 규정액의 반만 지급한다. 단, 가입일로부터 만6월이 경과한 자로서 해당부서 팀장의 제청[서식2] 및 상조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규정액의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# 제16조 (경조사유의 신고)

경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 및 가족 또는 대리인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

#### 제17조 (경조금 청구권의 소멸)

경조금 청구는 경조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경조금 지급신청서[서식3]을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상실한다. 단, 발생일은 실지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.

#### 제18조 (경조금의 지급)

경조금의 지급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총무가 이를 지급한다.

#### 제 19조 (자금운영 권한)

상조회 회장은 100만원 이내에서 단독으로 자금을 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 단, 지출내역 첨부하여 제출한다.

#### 제20조 (회계연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## 제21조 (결산)

총무는 매회계연도 말에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보고서를 회장 및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제22조 (잉여금의 처리)

회계연도 종료 후의 잉여금은 차입금, 기타 채무가 있을 때에는 우선 이에 충당하고 잔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.

#### 제23조 (장부와 서류)

본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고 공문서보관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- ① 규정집
- ② 회원명부
- ③ 회의록
- ④ 세입부
- ⑤ 회비징수부
- ⑥ 현금출납장
- ⑦ 증빙서류
- ⑧ 기타 중요한 장부와 서류

## 부 칙

1. 본회에 납입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
2. 본회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상관례에 준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임시총회에서 결정한다.
3. 본 회칙은 200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## 직급별 상조회비 / 월

대표이사	80,000 원
임원	50,000 원
부장, 차장	30,000 원
과장, 과장대우	25,000 원
대리	20,000 원
주임이하	15,000 원

[별표2]

## 경 조 금 지 급 기 준 표

순서	길 사	지 급 금 액	흉 사	지 급 금 액
1	본인 결혼	300,000원	본인 사망	1,000,000원
2	본인 생일	100,000원	부모, 배우자 사망	400,000원
3	본인 회갑	200,000원	자녀 사망	200,000원
4	부모회갑, 배우자 회갑, 형제자매 결혼(초혼)	100,000원	형제, 자매, 조부모, 외조부모 사망	100,000원
5	입택(집들이)	100,000원	본인 입원, 가족입원 (수술을 요하는 입원)	100,000원
6	자녀 출생, 돌	100,000원	본인입원, 가족입원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정한 4대 질병으로 입원 후 6개월 단위로 위로금 지급. (4대질병 진단서)	300,000원
7	사직 직원 (상조회 가입 5년 이상)			금 3돈
8	정년 및 명예퇴직, 일반퇴직 (상조회 가입 10년 이상)			금 1냥
<p>※비고 ① 부모란 친부모, 시부모, 장인장모를 모두 포함한다.                  ② 길·흉사 청첩 및 부고 시 상조금 전달한다.                  ③ 1, 2, 4의 흉사시 조화1조 추가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④ 4대 질병 : 암 / 뇌출혈 / 뇌경색증 / 급성심근경색증</p>				

[서식1]

## 입 회 원 서

소속 :

직위 :

성명 :

상기 본인은 주식회사 코백엔지니어링 상조회 회칙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위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오니, 입회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위 원 인 : (인)

주식회사 코백엔지니어링 상조회 회장 귀하



[서식3]

## 경 조 금 지 급 신 청 서

성 명	소속부서	직 위	본인과의 관계	경조사내용	입회연월일
고강원	생산본부	대리	본인	결혼	2005.04.01

위와 같이 경조금을 신청합니다.

2005 년 05 월 26 일

신청자    고강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

주식회사 코백엔지니어링 상조회 회장 귀하